

##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정이유

-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 내용중 주민등록증의 행정자치부 발급 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제정 운영중인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를 개정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권한위임 제외사항 중 용지관리를 삭제함. (안 제2조제1호)

#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17조의8(주민등록증의 발급등) 규정이 개정('99. 5. 24)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#### 주민등록법

제17조의8 (住民登錄證의 發給등) ①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 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한다.

④行政自治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住民登錄證을 일제히 更新하거나 檢印하게 할 수 있다.